

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2013. 3. 14. 원본영수	인
20 . . . 판결송달	

사 건 2012후3879 등록무효(특)

원고, 상고인 덕유패널 주식회사

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93-15

대표이사 채수하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

담당변호사 이흥복, 전익수, 이병훈

피고, 피상고인 서진공영 주식회사

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95번길 108

대표이사 정해용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화, 이슬

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허5103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

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3. 3. 14.

재판장	대법관	김소영	<u>김소영</u>	
	대법관	신영철	<u>신영철</u>	
주심	대법관	이상훈	<u>이상훈</u>	
	대법관	김용덕	<u>김용덕</u>	





정본입니다.

2013. 3. 15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김광태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